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8768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8769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
제8770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8771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8772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8773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8774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8775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8776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8777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8778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8779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8780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87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8782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8783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8784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8785호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33
제8786호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8787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8788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8789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8790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8791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8792호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8793호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51
제8794호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54
제8795호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879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8797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8798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62
제879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8800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8801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8802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1
제8803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8804호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8805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880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880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8808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8809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8810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8811호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90
제8812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881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8814호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96
제8815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제8816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8817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8818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881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8820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8821호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제8822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110
제8823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16
제882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제8825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768호****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등 아동” 을 “등이 아동” 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에 대한 인증서 교부
2.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 시설개선
3.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각 중” 을 “각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와 서울 소재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과의 상생을 위해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 범위에서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의3제1항 신설)

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제7조의3제2항 신설)

다.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의 지원사업을 위해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의3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69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동행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행센터"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복지·건강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를 말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거주·생활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4. "지역"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동행센터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부서 간에 협력하고 민과 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지향한다.

② 동행센터는 인권에 기반한 직무태도를 견지하며, 지역중심·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③ 동행센터는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물적 자원 확보 등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동행센터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 주민복지의 향상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3. 시·구·동 간 또는 민·관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외 동행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시장과 구청장은 동행센터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 및 지원
 3.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
 4.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동행센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동행센터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자원의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동행센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실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회의) ① 시장은 동행센터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문회의는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관련(복지, 건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 ③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범위) ① 동행센터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사회보장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보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돌봄SOS사업
3. 동행센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

② 동행센터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사회적 고립·빈곤·소외·위기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 유관부서, 자치구 및 복지관련 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밀접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지역주민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 활동
2.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활용한 유기적 민관협력 지원활동
- ③ 시장은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구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기가정통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자치구 통합 사례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 배치에 관하여 소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통장 및 반장 참여) 시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의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과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동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동행센터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여 관련 공무원이 매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동행센터 사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행센터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이 동행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방문인력 안전확보) ① 동행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 방문간호사
3. 통합사례관리사
4.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이 동행센터 업무 수행인력으로 인정하는 자
- 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의 방문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행센터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등 지급
2. 방문인력에게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
3.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의 지원사항은 시장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 통반장과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동행센터 사업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경우,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동행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 등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그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 경기 침체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및 복지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별 발굴·집중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하고자 기존 동주민센터의 복합 기능을 복지·건강분야 중심 사업으로 재편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유사 타 조례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조항 신설(부칙 제2조)

나. 기본원칙, 사업 범위 등 조례 각 조항에서 복지·건강 분야 외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행정, 여성 분야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삭제(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다. 사업 수행 시 수행 주체로 시 이외 자치구의 자율성과 책무를 강화하는 취지로 조항에 자치구 문구 삽입(제4조, 제11조)

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시 통·반장 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건강 분야 사업 수행인력의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9조, 제11조, 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70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별표 1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위치란 중 “신정동 1320-7”을 “신정이펜1로 20(신정동 1320-7)”으로 한다.

별표 1의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란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동 645-11)	장애인의 구강 전문치료
-----------------	--------------------------------	--------------

별표 1의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의 위치란 중 “백암면 용천리 264-5”을 “백암면 용천로 71번길 30(용천리 264-5)”로 하고, 같은 표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의 위치란 중 “외방리 174-5”를 “외방로 172번길 58(외방리 174-5)”로 하고, 같은 표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의 위치란 중 “내유동 294-2”를 “통일로 1102번길 46(내유동 294-2)”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 요 기 능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60(내곡동 6-7)	장애아 및 비장애아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북병원길 47(역촌동 산31)	전염병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길93(응암동 232-3)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길 39(신대방동 425)	일반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79(응두동 118-20)	일반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길 48(망우동 227)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편1로 20(신정동 1320-7)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3(흥익동 102)	장애인의 구강 전문치료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동 645-11)	장애인의 구강 전문치료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71번길 30(용천리 26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 172번길 58(외방리 17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02번길 46(내유동 294-2)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4년 8월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신규 개원예정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별표1]에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을 추가하여 시립병원을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에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신설(제10조제2항제6호)

나.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의 명칭 및 위치 신설 및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백암정신병원·축령정신병원·고양정신병원의 위치 수정(별표1)

◆ **서울특별시조례 제8771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

제3조의3을 제3조의2로 한다.

제13조를 “①”을 삭제한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직원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 포함)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 근로조건은 의료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아목을 삭제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의료원 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3조 제1항 7호 신설,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변경)

－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신설

나. 조례의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폐지, 직원에 대한 조치 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직원에 대한 조치 규정(부칙 제3조)

▶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포함)은 서울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조건은 서울의료원의 정관과 규정을 따른다.

다. 다른 조례 개정(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관련 조례 정비)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삭제(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개정(제4조 제2항)

▶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 위탁기관을 서울의료원으로 명확화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 개정(부칙 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부칙 제4조4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8772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제25조의2제3항(중전의 제2항) 및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우선주차장”을 각각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고, 제4항(중전의 제3항) 제2호 중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를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

별표1 중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은 주차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요금은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을 따른다.

별도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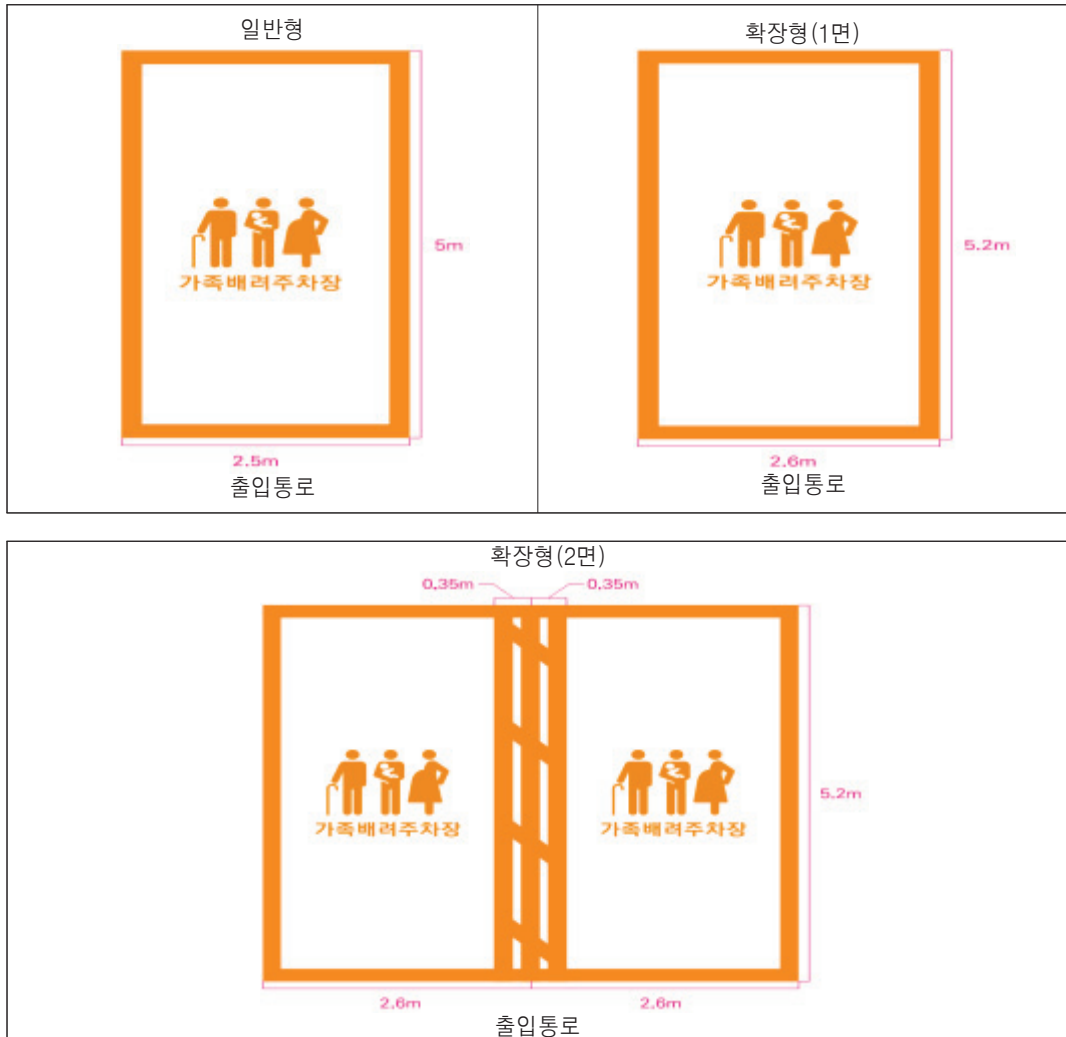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여성우선주차구역” 을 “가족배려주차구획”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5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을 “제25조의2제4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으로 한다.

[별도 제3호 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5항 관련)



- 비 고 -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제 주차수요 대비 월정기권 수요가 월등히 높은 노상주차장의 주차실태를 반영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 증대 및 주차 수입 확충을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이용대상 확대

- 이용대상 : 여성 →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나.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은 시간제 주차수요는 낮고 정기주차 수요는 높은 노상주차장 중 주차실태 등 지역 여건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

◆ **서울특별시조례 제8773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민간기관·단체가” 를 “민간기관·단체,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장이 민간에서 다회용품 사용 장려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다회용품 관련 기업이나 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에서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사업 추진 시, 시장의 행·재정적 지원 규정 마련(제7조제2항).

나. 시장이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74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조절”을 “조절, 탄소 흡수”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중앙분리대”를 “중앙분리대, 교통섬”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대응에 따라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탄소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의 교통섬에 그늘목 식재,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가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기능과 함께 탄소 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제1항제4호).

나. 기후변화 대응, 녹지 확충,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중앙분리대 뿐만 아니라 교통섬에도 그늘목, 녹지대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제1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75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21년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인식과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서울시 역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두고 있고 각종 시범 사업들도 진행 중에 있음.

-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케어러들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주거비 문제로 나타남. 또한,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에 떠밀려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애초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생애 전반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현행 조례가 다양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주거비 등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규정과 교육 관련 구체적 지원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

나.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교육 지원사업' 추가

◆ **서울특별시조례 제8776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의무자와 동거하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제8조의 제목 “(노인건강실태조사)”를 “(노인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1항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1항 중 “취하여야 한다.”를 “취해야 하며,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심리·정서지원사업
2. 홀로 사는 노인 사회참여사업
3. 홀로 사는 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4.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제3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0년 전국 기준 혼자 사는 노인가구는 166만 1천 가구이며(여성비율 71.9%) 전체 노인가구의 35.1%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3조제3호).
- 나.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1항6호).
- 다.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 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함(제18조의2제1항).
- 마.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항목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0조제2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77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 중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진흥계획 수립 시 자치구청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제5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78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관광산업 기반 여건을 확립하고, 불법 관광산업으로 인한 관광객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협력하도록 함(제4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79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30%” 를 “50%”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현행 30% 범위에서 50% 범위로 상향 조정하여 호텔 등 숙박업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 제6조의2(재난발생시 부담금의 경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현행 30% 범위에서 50% 범위로 상향 조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780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저탄소 사무실 조성)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저탄소 보고문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인쇄 관련 물품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녹색생활 실천으로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한 노력 책무를 규정함(제24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7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4.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며, 이 중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0.59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자녀 가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인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 근거를 규정함(제20조제1항제14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82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독성 농약 등 화학방제작업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의 관리 및 운영 책임과 방제 의무가 있는 산림에 있어 친환경방제 추진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의 친환경 방제사항을 규정함(제10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83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치료보호 및 사업 등)” 을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 으로 하고, 제1항제2호 중 “안전률” 을 “안전율”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방지율” 을 “방지를”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직장인,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의 안전한 취급·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를 추가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의 제목을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함.

나.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추가함(제5조제1항제5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84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로, “마이스(MICE)산업”을 “마이스(MICE)산업을”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중 “전시회(Exhibition)”를 “전시회(Exhibition) 및 국제이벤트(Event)”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실·본부·국장”을 “실·본부·국장 및 전담조직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서장이 된다”를 “부서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급속하게 성장하는 마이스산업의 환경변화를 행정에 반영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마이스 육성 및 지원 근거 법령 명시(제1조).

나. 마이스(MICE)산업 개념에 국제이벤트를 추가(제2조).

다.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85호**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발(足)은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로서,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임.
-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맨발 걷기’ 및 ‘맨발 보행로’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마.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86호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① 시장은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문학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문학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 제5조 등에 따른 문학진흥 사업과 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학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학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 서울시 문학진흥 및 서울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시민, 문학단체의 수요에 보다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학술 활동 지원 및 문학교육 단체 지원을 명시함(제5조).
- 나.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87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계펌프장” 을 ““중계펌프장”” 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수탁 기관”이라 함은 제2장의” 를 ““관리대행업자”라고 함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의” 로 하고, “위탁받은 기관을” 을 “대행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자를” 로 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징수를 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 을 “징수를 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로 하여금”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선의 시행기관” 을 “수선은” 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위탁” 을 “관리대행”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를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탁할” 을 “관리대행할” 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1. 제14조에 따른 관리대행 해지로 잔여 관리대행기간을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2.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재대행계약을 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를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사무” 로 한다.

제9조 중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을 “관리대행할” 로 수정한다.

제10조 제목 중 “수탁기관” 을 “관리대행업자” 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수탁기관을” 을 “관리대행업자를”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위탁사무의” 를 “관리대행사무의”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위탁사무” 를 “관리대행사무” 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적정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중 “수탁기관의” 를 “관리대행업자의”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으로, “위탁받은” 은 “관리대행”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탁기관은” 을 “관리대행업자는”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수탁기관은” 을 “관리대행업자는” 으로, “위탁조건” 을 “관리대행조건” 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수탁기관에” 를 “관리대행업자에” 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수탁기관은” 을 “관리대행업자는” 으로, “수입·지출에” 는 “지출에” 로, “공인회계사” 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로, “3월” 은 “3개월”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탁기관에” 를 “관리대행업자에” 로, “위탁사무” 를 “관리대행사무”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탁사무 처리가” 를 “관리대행사무 처리가” 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수탁기관에” 를 “관리대행업자에” 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위탁의 취소” 를 “관리대행의 해지” 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위탁을 취소할” 을 “관리대행을 해지할” 로 하고, “수탁기관에” 를 “관리대행업자에” 로 한다.

제14조제1항1호 중 “수탁기관이” 를 “관리대행업자가” 로 한다.

제14조제1항2호 중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을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사무를” 로 한다.

제14조제1항3호 중 “위탁을” 을 “관리대행을” 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탁이” 를 “관리대행이” 로, “수탁기관은” 을 “관리대행업자는” 으로 하고, “위탁받은” 을 “관리대행”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위탁계약 체결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었으나, 법령개정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대행업체 선정 절차가 아닌 민간위탁 선정절차를 따르고 있어 조례상의 “위탁”을 “관리대행”으로 개정하여 대행업체 선정 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 10.)을 적용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 또는 수탁업체로 표기된 부분을 관리대행, 관리대행업자로 개정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아닌 환경부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제2조~제14조).

나. 「하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관리대행 선정절차를 따르되 관리대행 최초 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상 행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제7조제3항 신설).

다. 대행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대행비용원가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10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88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7의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8을 삭제하며, 같은 목 9부터 12까지를 8부터 11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1의 감면대상란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 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로 하며, 같은 목 12를 삭제하고, 같은 목 13 및 14를 각각 12 및 13으로 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우리나라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의 이용료 감면(50%) 기준을 현행 다자녀 가족 기준(자녀 2명)에 맞춰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규정함(별표 3 제1호나목).
- 나. 물재생시설 내 주차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규정함(별표 3 제2호나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8789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 다만, 공사 준공 등으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 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원위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보도상영업시설물에서 인접한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기거나 보도상영업시설물이 건물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 건물주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이에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경우 서울시가 위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안전과 원활한 통행 및 건물주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전 조항에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신설하되, 공사 준공 등으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 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원위치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90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증진”을 “증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방에”를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를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현황”을 “현황, 정신건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으로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상, 모범·우수 소방공무원 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
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

5.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
 6.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9.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의3(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3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소방장 또는 소방령
 2. 공무원단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회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행하는 위험직무의 특성상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 평균 자살률은 물론 OECD 평균 자살률을 상회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사항들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의료기관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7호 신설).
- 나. 시장의 책무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조).
- 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2항제5호 신설).
- 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지원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사업 규정을 분리하여 신설함(제8조의2 신설).
- 마.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3 신설).
- 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12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91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제도는 수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1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인자의 신청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92호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부분 중 “국장” 을 “부서장”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 및 과장” 을 “부서장”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수소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산업육성위원회 당연직 및 부위원장을 수소산업 업무 담당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의결후 위원회를 자동해산하도록 규정 (제11조제3항)

다. 의원의 임기 관련 규정 삭제 (제11조제3항)

라. 위원회의 정기·수시 회의 관련 규정 삭제 (제11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93호**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순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원상 부상·질병이 인정된 사람(이하 “공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의 직무 수행 활동
2.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활동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시장은 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2.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3.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취업·창업 지원)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다.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라.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순직소방공무원의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94호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라 한다)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 생활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3조, 제4조).

다. 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및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제8조).

마. 시장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95호**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우 시민의 참여 실적·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거나 추첨,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를 “경우” 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그밖” 을 “그 밖” 으로 한다.

1. 시민의 참여 실적·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지급

2. 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경품은 중복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경품의 종류, 제공 방법 및 제공 금액 등 경품 제공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조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한 경품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경품 관련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품 제공 관련 내부 규칙이 없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고,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경품 제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경품 제공의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경품 제공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품의 종류, 제공 방법 및 제공 금액 등 경품 제공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제7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9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장민원 “이란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말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을 “위원회는” 으로,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를 “필요하다고” 로 한다.

제8장을 제9장으로 하고,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제8장, 제25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현장민원 지원 및 점검·평가 등

제25조(현장민원 신고활동 지원) 위원회는 자치구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관할 구역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신고하는 주민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 지역 지킴이(시민불편살피미)’ 점검·신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중전의 제25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제22조 및 제23조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중전의 제27조) 중 “제25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제26조” 를 “제27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제28조”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현장민원과 ‘내 지역 지킴이(시민불편살피미)’ 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장민원 확인·점검에 따른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현장민원으로 정의함(제2조제5호).

나.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5조).

다.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불량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6조제1항).

라. 평가 등을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마. 시민참여옴부즈만이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제27조제7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97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이용공간 조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공공기관 및 시설 내 아이들의 안전한 체험과 성장을 위한 공공키즈카페 등 아동이용 공간이 확대 설치되고 있는바,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5조 제4호에 아동이용공간 조성 규정을 신설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798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
 4.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용품의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용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구조 활동)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및 보호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2조).

나.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9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관리 지원

제6조의2제2항 중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초등학교 통학로가 협소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함.
-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와 한쪽 방향 도로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필요시 반대편 도로까지 보호구역 지정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용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8호).
- 나.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사항에 학교용지를 활용한 설치·관리의 지원을 신설함(제6조제2항제4호).
- 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변경함(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 라. 시장이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6제1항).
- 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7조의6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00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 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각각 100분의 50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 을 “100분의 50”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문화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이용료 면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며, 이 중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0.59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자녀 가족이 서울시의 여성관련시설인 여성발전센터의 직업 교육, 생활문화교육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및 보육실, 생활문화교육의 이용료 면제 근거를 규정함(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801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조제목 중 “취약계층 교육지원” 을 “교육지원”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셋째” 를 “둘째”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손자녀에 해당하는” 을 “손자녀 이하 6대손까지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다자녀가족의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수가 매우 적음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교육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양한 교육지원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교육지원"으로 개정함(제7조 제목).
- 나.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함(제7조제1항제6호).
- 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교육지원 서비스 대상을 기존 손자녀에서 6대손까지로 확대함(제7조제1항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802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록장치 시범·부착)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부착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지원)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법률상담
2.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사고피해자는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또한 자동차 구조가 복잡해지고, 전자장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동차제조사는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적정성, 사고 통계 조사, 급발진 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시민안전 보호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구제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급발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제2조).
- 나. 급발진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해 예방 교육 실시를 규정함(제3조~제4조 및 제6조).
- 다.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제5조).
- 라. 공용차량에 급발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 마.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재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03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는 공회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륜차는 배출가스의 총량은 적으나 배출가스 중 탄소와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제2조제1호 단서 삭제).

나. 시행일을 2024. 1. 1.로 함(부칙).

◆ **서울특별시조례 제8804호**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립준비청년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자립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2호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말한다.

제6조제8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립준비청년시설 체험, 이용 지원 및 홍보 사업
9.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10.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11. 자립준비청년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12.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제9조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준하는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 자립준비청년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신설을 통해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5호).

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제6조제8호~제13호).

다. 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제9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805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함(제4조의2).

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0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을 위하여 의사소통 수단 및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임.
- 그러나 일례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의 약 6.9%로 현저히 낮은 현실임.
- 이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수화, 점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관한 교육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1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80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제8장(제19조 및 제2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제19조(버스요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서울시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근거 신설(제4조)

나.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신설(제19조제1항 및 제2항)

다.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 근거 신설(제19조제3항)

라.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근거 신설(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08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시민이 문자 내용만으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음
- 이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전파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전파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09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 중 “시장이 규칙으로” 를 “사장이” 로 한다.

제6조의2 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를 “규정 및 내규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중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규칙이 아닌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규정 및 내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이미 세종문화회관이 대관 규정과 공연장 대관 내규를 마련하여 공정한 대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 현 상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대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규정 및 내규로 정하도록 함(제6조의2 제2항 및 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10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시의” 를 “서울특별시의” 로, “이바지 함” 을 “이바지함”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 중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을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로, “마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원문화활동”을 “정원문화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을 “정원문화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위하여”를 “높이기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심내에 시민”을 “시민”으로, “조성하는데 힘써야”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중 “정원법 제18조의6”을 “법 제18조의6제3항”으로, “서울시내”를 “서울시 내”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정원박람회”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방정원 운영·관리)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산하고 녹지·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심내”를 “도심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국가정원 운영·관리) ① 시장은 시가 조성·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시의 상징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의 지원” 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의 지원

제18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이라 한다)” 을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정원박람회

제19조(중전의 제17조) 중 “시민 참여적이고” 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8조)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9조)제2항 중 “그 공정성·객관성 등” 을 “공정성·객관성” 으로, “내부평가(자체평가)” 를 “내부평가” 로 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중전의 제20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세계의 도시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산불, 폭우, 미세먼지 발생 등 자연 재해에 대응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도시,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음. 서울의 공간 구조를 도시공원과 함께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이 필요한 시점임.
-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도시 조성 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진흥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정원산업 및 지방정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를 추가 정의함(제2조).
- 나.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제5조제3항).
- 다. 정원진흥실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7조제2항).
- 라.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마. 국가정원 신청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 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811호**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건설기술자” 등 건설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중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로 한다.

제8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1조제8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를 각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중소건설업자”를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건설업자들”을 “건설업을 하는 자들”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지역중소건설업자”를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중소건설업자”를 각각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 중소건설업자”를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 등으로 순화된 용어를 서울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 등으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812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의결후 위원회를 자동해산하도록 규정(제15조제5항)

나. 위원장 소집 규정 삭제(제16조제2항)

다. 운영 필요성이 낮은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삭제(제1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1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제외한다.
8.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10조 제3항 중 “위촉하여야”를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청년친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로 한다.

-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평가
 4.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5.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7.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8.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9.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의 개정(2023.3.21.)에 따라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와 관련한 조항들을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정비함
- 서울시 청년지원기관의 유형 및 기능, 체제 개편과 그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경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개정함(제3조제7호).
- 나.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신설함(제3조제8호).
- 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0조제3항).
- 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4항).
- 마.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 지원기관을 통합하고 서울 광역청년센터로 명칭 변경(제20조제1항)
- 바. 서울광역청년센터의 기능을 규정(제20조제2항).
- 사.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기능을 조정 및 강화(제20조제3항)
- 아.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제20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14호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청년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친화 영향평가) 시장은 청년정책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이하 “자치구” 라 한다)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구가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제1조~제2조)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제4조)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제5조~제6조)

라.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7조~제8조)

마.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제10조)

바. 청년친화도시 지정(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15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13세”를 “18세”로 한다.

제4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자동결 시술 비용
2. 정·난관 복원 시술비

③ 시장은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인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등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대상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둥이 행복카드 정의규정에서 다자녀 가족의 막내 나이를 18세 이하로 규정함(제2조제4호).

나.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제2항 신설).

다.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제3항 신설).

라. 신설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제4조제4항 신설).

마.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816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사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사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사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사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사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부” 를 “전부 또는 일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사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풍수해로부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우선적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 방지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817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보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 개·보수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전 보장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함(제5조제1항제6호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818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로 한다.

별표 3 사용료 산정기준 중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항 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련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근거조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로 수정함(제23조제3항 제2호, 별표 3).

◆ 서울특별시조례 제881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조 제목을 “사용료” 에서 “사용료 등” 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제28조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 공공하수도의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하수도법」 제65조제2항(사용료 등)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수입금의 예외적 용도로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5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820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라.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하수도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는 한편,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제29조제1항제6호 다목 및 라목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821호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4”를 “제4조 및 제4조의6”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2항”을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제8조제1항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향후 헌혈인구 감소 및 혈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10~20대에 편중된 헌혈자 구조를 개선하여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를 통해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내 헌혈을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재직 공무원의 헌혈공가 사용률은 저조한 상황임.
- 이에 현행 조례에 헌혈 공가 제도를 명시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헌혈 공가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조문 번호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헌혈 시 공가 활용 장려를 규정함(제4조의2 신설).
- 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함(제4조의2 신설).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제1조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8822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안전시설중 별표1의 설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제5조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

제5조(지원심사) ① 제4조제2호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 설치비용 등

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소방설비등과 관련하여 설치비용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설치비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지급
2.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설비등(제2조 관련)

구 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알림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안전시설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등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설비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서울 시내 화재위험성이 높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종류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관계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함(제3조).

라.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소방설비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신청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함(제7조).

[별지 1]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신청인이 설치, □시장이 설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용도	
	주소			수용인원	
신청 목적					
설치 필요성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 비상소화장치	()		
	☐ 소방시설	☐ 소화기구	()		
		☐ 화재알림설비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비상경보설비	()		
		☐ 자동화재속보설비	()		
		☐ 가스누설경보기	()		
		☐ 유도등	()		
		☐ 안전시설	☐ 누전차단기	()	
	☐ 가스차단기		()		
	☐ 기 타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별도첨부 가능)				

「화재예방강화지역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W 원정)	
	② 예금주	계좌번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 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원금 신청서	➔	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	➔	서류 검토	➔	지원금
신청인		처리기관 (OO시장)		처리기관 (OO시장)		처리 (OO)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울특별시조례 제8823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자치구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확정 후 교육감,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교육감, 구청장 등에게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감, 구청장 등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환경교육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6.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2.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기초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원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3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에 환경교육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계획, 사업, 위탁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신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명칭 (법인[], 비법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전자우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신청내용	기관설립 목적					
	전문인력 (상근)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소지 자격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2. 환경교육 전문인력(환경교육사 1인 포함) 인적사항 및 자격 서류 1부 3.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신설>

제 호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기관 소재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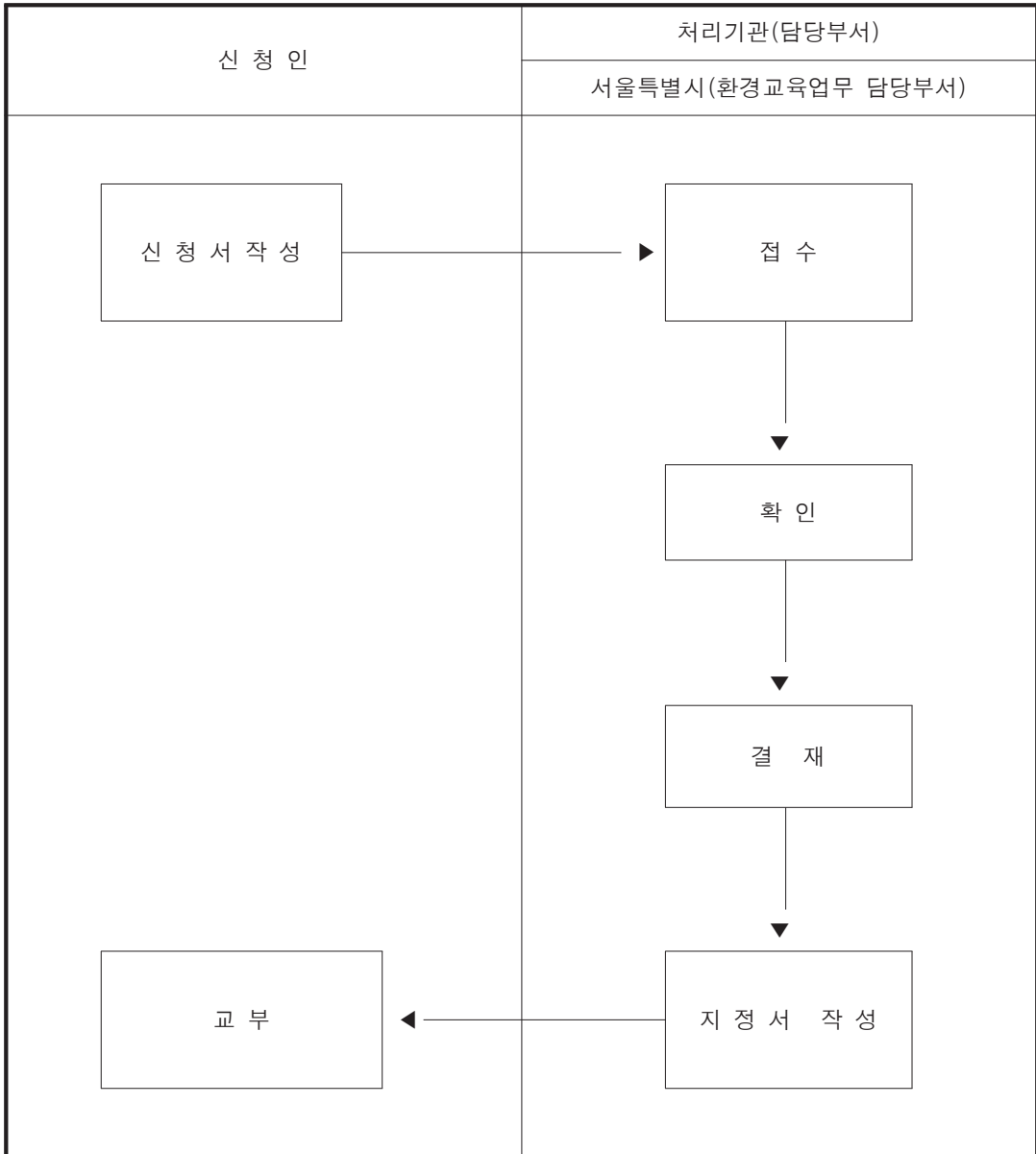
(앞쪽)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기관명(법인명)		②대표자	
	③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④전자우편주소			
신청내역	⑤환경교육센터 명칭		⑥대표자	
	⑦환경교육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⑧개설 예정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제 호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기 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직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춰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 및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며,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실천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환경교육 정의 및 환경교육센터 명칭·역할 등을 「환경교육법」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법적 완결성·통일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시장·구청장·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5조).
- 라.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마.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사. 사업자 및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제10조).
- 아.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제12조).
- 자. 환경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2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제3항제1호 후단 중 “사람,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동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면제

제10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를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동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제10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제10조제5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로 한정)가 주민회합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가. 신청 당일 : 전액 반환

나. 10일전 : 전액 반환

다. 5일전 : 10분의 9

라. 1일전 : 10분의 7

제11조제2항제2호(중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를 “사용료 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3에서 제한하는 행사

별표5의 비고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0조제5호바목의 행사에 대해서는 판매부스 금액을 30%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체육시설 만족도를 제고하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시립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조건으로 신설함(제5조의3).
- 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입장료 면제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제9조 제10조).
- 다. 시립체육시설로 인한 소음·교통체증 발생 지역의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함(제10조).
- 라.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들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전용사용료를 100분의 30으로 감액함(제10조제5호바목).
- 마. 시립체육시설의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액을 완화함(제11조).
- 바. 상업사용료 내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행사관련 물품판매를 위한 판매부스 1개당 최소가격을 제10조제5호바목의 행사인 경우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함(별표5 비고란 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825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의 보고)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제1항과 같은 건의사항을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집행기관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 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통제나 정보의 공개가 미흡하므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및 교육감이 국가기관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을 건의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54조의2제1항).

나. 시장 및 교육감이 법령 제·개정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54조의2제2항).

다.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건의하는 경우 의회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2제3항).